



**City of San Ramon**  
**Building and Safety Services**  
 7000 Bollinger Canyon Rd, San Ramon, CA 94583  
 Office: (925) 973-2580 Fax (925) 838-2821  
 E-mail: [Building@sanramon.ca.gov](mailto:Building@sanramon.ca.gov)  
 Website: [www.sanramon.ca.gov](http://www.sanramon.ca.gov)  
**Updated: May 2021**

## 사업허가증 및 상업건축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공건물의 소유주와 세입자는 연방법 및 주법에 의거한 장애인 접근법을 준수해야 할 중요하고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귀하의 법적 의무 및 장애인 접근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서비스학과,  
 국가 건축가 부문,  
 CASp 프로그램

재활과 장애인 접근  
 서비스

일반 서비스학과, 장애  
 접근에 관한  
 캘리포니아위원회

[www.dgs.ca.gov/dsa](http://www.dgs.ca.gov/dsa)  
[www.dgs.ca.gov/casp](http://www.dgs.ca.gov/casp)

[www.dor.ca.gov](http://www.dor.ca.gov)  
[www.rehab.cahwnet.gov/  
 disabilityaccessinfo](http://www.rehab.cahwnet.gov/disabilityaccessinfo)

[www.cdda.ca.gov](http://www.cdda.ca.gov)  
[www.cdda.ca.gov/resourc  
 es-menu/](http://www.cdda.ca.gov/resources-menu/)

### 공인 접근성 전문가 검사 서비스

주법 및 연방법에 의거한 건설 관련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면 장애인도 공공장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업장을 새로 건설된 시설로 이전을 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할 예정이라면, 프로세스 초기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 공인 전문 (CASp) 의 서비스에 참여하여 공사 관련 접근성 표준 준수법 구성-관련 접근성 표준 준수 법, CRASCA, 민법 55.51-55.545)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새로운 시설에 관한 허가 및 승인을 건물 관리 부서에서 받았어도 의도하지 않은 접근 장벽 및 위반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공간에 가구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의 이유로, 이동 후 CASp 검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변경을 계획한 경우, CASp 는 개선 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공공 수용 구역에 대한 접근성 적합성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ASp 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인받은 전문가이고, 접근성 표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Sp 검사 보고서는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가 제기될 경우 CRASCA 에 의거 사업장 및 시설 소유자에게 특정 법적 혜택을 주도록 준비되었다.

CASp 를 찾으려면 [www.apps2.dgs.ca.gov/DSA/casp/casp\\_certified\\_list.aspx](http://www.apps2.dgs.ca.gov/DSA/casp/casp_certified_list.aspx) 를 방문하십시오.

## 정부 신용공제, 과세소득공제 및 자금보조

접근성을 준수하고 접근성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돕는 주 연방 프로그램

### 작업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장애인 접근성 신용공제

연방 신용공제—연방조세법(내부 수익 코드) 제44 항은 중소기업이 장애인 접근성 목적으로 지출에 대해 연방 신용공제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 국세청(국세청, IRS) 양식 8826 을 참조하십시오. 장애인 접근성 신용공제는 [www.irs.gov](http://www.irs.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신용공제—세입 및 과세법(세입 및 세법) 제17053.42 항 및 23642 항에 따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연방 장애인 접근성 신용공제에 해당하는 주정부 신용공제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세금 지방청 FT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양식 3548 을 참조하십시오.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접근성 신용공제는 [www.ftb.ca.gov](http://www.ftb.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 및 교통 장애물 제거에 대한 과세소득공제

연방 과세소득공제—연방 조세법 제 190 항에 따라 모든 규모의 사업장은 장애인의 신체적 구조적 및 교통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중 자격요건을 갖추면 연간 공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양식 535 를 확인하십시오. 사업장 경비에 대한 내용은 [www.irs.gov](http://www.irs.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자본 접근성 자금보조 프로그램

주정부 자금보조 선택사항—캘리포니아 자본 접근성 프로그램(캘리포니아 자본 접근 프로그램, CalCAP) 미국 장애인법 장애가 있는 미국인, (ADA)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게 연방 ADA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reasurer.ca.gov/cpcf/calcap](http://www.treasurer.ca.gov/cpcf/calcap) 에서 확인하십시오.

##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 요구사항

1990 년 미국 장애인법 (ADA) — ADA 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시민권법으로 모든 공공편의 시설 및 상업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a.gov](http://www.ada.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건축법 캘리포니아 건축법, (CBC) - CBC 는 준수 건설을위한 표준인 건설 관련 접근성 조항을 포함합니다. 시설의 법 준수 여부는 건설 또는 개조 당시의 CBC 버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sc.ca.gov](http://www.bsc.ca.gov) 에서 확인하십시오.